2020. 9 Vol.13

P&B Report

Policy & Business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37건
교육위원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33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외 42건
외교통일위원회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외 7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9건
환경노동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외 1건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61건

DR & AJU 입법전략센터
Government Relations Center

SAMPLE

P&B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주요 구성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을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별첨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SAMPLE

Contents

9월호는
2020.8.5.부터
2020.9.14.까지 상정된
법률안을 기준으로
제작하였습니다.

I. 소위원회

08 **1. 상정 법률안 목록**

10 **2. 주요 법률안 소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0 1) 연구산업진흥법안(이상민의원 등 10인)
12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1인)
13 3)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박완주의원 등 12인)

외교통일위원회

14 4)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5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1인)
16 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5인)
17 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4인)
19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의원 등 14인)
20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2인)
21 10)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노웅래의원 등 13인)

국토교통위원회

22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등 13인)

II. 상임위원회

24 **1. 상정 법률안 목록**

28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8 1)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윤호중의원 등 15인)
30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20인)
32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34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35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2인)
37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38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등 12인)
39 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등 14인)
41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46 10)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등 11인)
47 1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0인)
48 1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SAMPLE

교육위원회
49 1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의원 등 14인)
50 14)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완수의원 등 11인)
51 1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등 11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2 1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40인)
53 1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의원 등 30인)
54 18)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3인)
55 19)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이상민의원 등 11인)
57 20)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토교통위원회
59 2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60 2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2인)
61 23)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은혜의원 등 25인)
63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등 11인)
64 25)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박홍근의원 등 11인)
67 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준표의원 등 12인)
68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등 13인)

69 **3. 법률안 비교분석**
69 1)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등 10인)

III. 국회본회의

72 **1. 상정 법률안 목록**

73 **2. 주요 법률안 소개**
73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76 별첨. 1. 입법전략센터 6~8월 활동
80 2. 정당별 의원 현황
89 3. 국회 일정표
95 4. 용어해설

SAMPLE

SAMPLE

B&B Report

SAMPLE

Ⅰ.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7. 연구산업진흥법안
		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1.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외교통일위원회		1.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8.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6.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10.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연구산업진흥법안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959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기동민·김종민·김진표·김회재·박성준·박영순·어기구·장철민·황운하 의원 (10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15. 제안
2020.07.16. 상임위 회부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정부는 R&D 생산성 제고 및 과학기술기반 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구산업 혁신성장전략"을 수립·발표하였음. R&D 연동산업 전체를 하나의 산업인 "연구산업"으로 묶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 활동을 보다 전문화된 주체들에게 분업화할 수 있는 개방형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있음.

우리나라는 세계 5위 수준의 R&D 투자국('16년, 598억 달러)으로 R&D 생산성이 국가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이에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산업으로, 법에 근거를 둔 체계적인 육성이 필요함. 연구산업 중 주문연구·연구관리 분야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이 규정되어 있던 「이공계지원특별법」은 이공계인력의 활용 촉진을 위한 법으로서, 연구산업 전 분야를 포괄하는 산업 진흥법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연구산업진흥법」을 통하여 연구산업 발전을 위한 산업시장의 확대 및 산업 생태계의 체계적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4조 등).

관련법률

〈제정안과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과의 비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및 동 법 시행령	제 정 안
【연구개발서비스업 정의】 〈법 제2조제1항〉 ·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으로 정의	【연구산업 정의】 〈안 제2조〉 ·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포함한 연구장비, 연구재료·소재와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 방안 수립】 〈법 제18조제1항〉 · 과기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법 제18조제3항〉 ·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제1항〉 · 과기부장관은 5년마다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하여야 함 〈안 제4조제3항〉 · 연구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개발서비스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령 제17조제6항〉 · 국공립(연), 대학, 출연(연) 보유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 연구시설, 연구장비 지원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조성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조성 · 연구개발서비스업 기반조성	【연구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2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연구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1조〉 · 법안 목적에 "연구산업 발전 기반 조성" 포함 〈안 제7조제1항〉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사업자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 〈안 제4조제2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SAMPLE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법 제18조제2항〉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 제17조제1항 내지 제5항〉 •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신고기준 규정	【연구산업 신고】 〈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6조제5항〉 •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요건, 신고수리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연구개발서비스업의 국가자격 도입·운영】 〈법 제19조제1항〉 • 연구개발서비스업 효율적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등에 관한 국가자격 도입 〈법 제19조제1항〉 • 대학 교육과정에 연구개발서비스 관련 과정 포함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1조〉 • 연구기획평가사의 자격요건, 자격시험, 양성과정 규정	〈안 제4조제2항〉 •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포함

관계기관 의견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시정조치와 중복되어 중복 제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정안의 담당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일원화하여 타법과의 중복규제 문제를 방지하고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수정하여 수용한다는 입장임.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석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509
제 안 자 **미래통합당** 김성원·김병욱·김석기·김정재·김형동·배현진·성일종·유상범·정진석·최승재 의원 (10인)
무소속 윤상현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06. 제안
2020.07.07. 상임위 회부
2020.07.28. 상임위 상정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령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이하 "원전"이라 함)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면 원전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두 가지뿐임.

설계수명제도를 최초로 채택한 미국은 법률에서 원전의 설계수명(Plant Design Life)을 40년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술적으로 안전을 고려한 수명이 아니라 전력회사의 투자 이윤을 보장하면서 사업독점을 금지하려는 관점에서 설정한 기간임.

그렇기 때문에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원전이 바로 기술적으로 불안정한 원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설계수명기한이 도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영구정지"하고 결국 해체하는 것은 전력 수요나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므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음.

주요내용

원전 운영자로 하여금 "계속운전"과 "영구정지" 외에 원전의 운전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휴지(休止)"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전을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 두려는 것임(안 제2조, 제21조, 제23조 및 제26조).

관계기관 의견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정안에서는 '휴지'에 따른 정지 상태에서의 기간, 절차, 방법, 안전성 확보 등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원전이 장기간 정지상태가 지속될 경우 부품의 물리적 성질이 저하되는 경년열화(aged deterioration) 발생 가능성 높은데 이러한 장기간 원전 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발생 요인에 대한 검토·분석이 되어 있지 않으며, 미국·프랑스·일본 등 주요 원전 운영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SAMPLE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822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김경만·김승남·김회재·민홍철·박성준·박영순·백혜련·신정훈·안규백·윤준병·조오섭 의원 (12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22. 제안
2020.06.29. 상임위 회부
2020.07.28. 상임위 상정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축조심사

주요내용

가. 청색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청색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청색기술을 자연현상, 생태계 또는 생명체의 기본구조 또는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기술을 청색기술로 정의함(안 제2조).

다. 정부는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청색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정부는 민간 부문의 청색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청색기술개발을 이용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과 청색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안 제9조).

마. 정부는 청색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인력양성계획을 세우고, 인력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1조).

바. 정부는 청색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전문인력 양성, 연구성과 실용화 및 기업 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기 위한 청색기술센터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청색기술 연구개발 거점기능을 담당할 청색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지정할 수 있고, 청색기술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청색기술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아. 정부는 청색기술연구단지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고, 청색기술의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8조).

자. 정부는 청색기술의 발전과 산업화가 경제·사회·문화·윤리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19조).

관계기관 의견

환경부

생태계와 같은 특정 분야의 경우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도 관여하고 있으므로, 기술지도 작성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689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김윤덕·박정·안민석·이개호·이규민·이성만·이용선·이장섭·인재근·임종성·정춘숙·조오섭·최인호 의원 (14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06. 제안
2020.07.07. 상임위 회부
2020.07.29.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의결(원안가결)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중소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음.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기업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노력해야 함. 그런데 2019년 1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의 인정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영업비밀"의 정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바 있음.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정의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호).

관련법률

〈중소기업 영업비밀에 대한 인정요건 비교〉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은 ①비밀관리성, ②비공지성, ③경제적 유용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구 분		부정경쟁방지법	하도급법	중소기업기술보호법
보호대상		"영업비밀"	"기술자료"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인정 요건	비밀 관리성	비밀로 관리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는
	비공지성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경제적 유용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직접 생산하거나 생산할 예정인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 · 생산 · 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개정안은 비밀관리성 요건을 완화하여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관리되었다면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하려는 것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폭 넓게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431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고용진·김남국·김승원·박영순·송갑석·어기구·이상민·이수진·장철민·한준호·황운하 의원 (12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03. 제안
2020.07.06. 상임위 회부
2020.07.29.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의 장이 경쟁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기준은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공장, 설비 및 장비, 최소 인력 등이며, 매년 약 2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하여 직접생산 확인을 받고 있음.
그러나 창업기업의 경우 설립 초기부터 큰 투자비용이 드는 공장, 설비 등을 갖추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또한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이후 자연재난 또는 화재 등으로 생산설비가 멸실되어 계약이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기술개발을 통하여 경쟁제품에 대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보유하고 있으나, 생산설비 등을 갖추지 못한 창업기업과 자연재난 등으로 공장, 시설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이 다른 중소기업의 생산설비를 이용하여 경쟁제품을 생산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조달시장에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계약이행을 원활히 하여 경영정상화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접생산 확인제도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관계기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기업의 경우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기만 하면 위탁생산을 통한 납품이 제한없이 가능해져 일반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산업재산권에 대한 명의 이전·도용·공동사용 등을 둘러싼 부작용이 우려되며, 재해 중소기업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서 유효기간 연장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므로 법률 개정은 불필요함.

SAMPLE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175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권인숙·김민기·김주영·박영순·박정·윤관석·윤준병·장철민·전재수·천준호·한준호·홍영표 의원 (13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04. 제안
2020.06.16. 상임위 회부
2020.07.29.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제안설명/축조심사

제안이유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에 따르면 60대 이상 사업체 대표자는 전년 대비 5만 6,000개 증가하여 전체 사업체 증가 수 8만 3,000개의 약 67.4%를 차지하고 증가율도 6.4%로 50대 1.3%, 40대 0.3%, 30대 0.8%에 비해 월등히 높음.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한편,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취업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의 비중도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모든 창업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장년의 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청년 및 60세 이상 연령대의 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장년의 창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청·장년 창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우대하고 청·장년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함(안 제7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청·장년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이 설립한 기업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장년을 선정하여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차.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하여 자금조달, 인력, 기술, 판로, 사업장 입지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에 대한 투자유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장년의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청·장년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관계기관 의견

중소벤처기업부

현행법으로 모든 연령대의 창업지원이 가능한데, 정책지원 대상의 연령만을 구분하여 동일한 목적의 별도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정책 수요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토교통위원회

1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848
제 안 자 (13인) **미래통합당** 김희국·강기윤·강대식·권명호·김병욱·김상훈·김석기·김용판·김정재·김형동·최승재·추경호·하영제 의원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7.13. 제안
2020.07.14. 상임위 회부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소위원회
2020.09.09. 상정/축조심사/의결(수정가결)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수급인을 처벌하도록 하여 하수급인을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공사의 발주자도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특정 건설사업자를 시공사로 선정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지만, 이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지 않아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발주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 신설 등).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남북한 상호 간 건설산업 교류협력이 긴요하므로 건설산업진흥 기본계획에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남북한 건설산업 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남북합의 및 남북관계 발전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로 법제화하기 보다는 기본 법체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임.

SAMPLE

B&B Report

SAMPLE

Ⅱ.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3. 법률안 비교분석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2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역사왜곡금지법안
	○	25.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28.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2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31.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3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行政訴訟法 일부개정법률안
		3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9. 기초학력 보장법안
		10.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11.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학교민주시민교육법안
		2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3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등에 관한 법률안
	○	6.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뇌연구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17.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연구산업진흥법안
		1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4.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25.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안
		31.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환경노동위원회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국토교통위원회		1.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3.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16.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1 공익법인의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13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강선우·권칠승·김민석·김수흥·김영배·박홍근·서삼석·신동근·윤관석·이학영·임종성·정성호·조오섭·홍익표 의원 (15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0. 제안
2020.06.16.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K스포츠·미르재단 사건」으로 대변되는 최순실·박근혜의 국정농단 사태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과 비리의 도관(導管)으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는 전례를 남겼음. 또한, 공익법인이 일부 재벌기업의 상속·증여와 편법적 지배구조 확장의 역할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 역시 공익법인 제도의 개정 필요성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음.

공익법인 제도의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이 수행할 사회적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학술·교육·연구·자선 등을 위한 선의의 목적이 왜곡되어서는 안 될 것임.

하지만, 우리의 공익법인 제도는 개별 소관 주무관청이 개별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사전 심사하고, 공익법인 설립 이후에는 감독 및 관리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회계나 세무사항에 대한 사후검증만을 국세청이 민간 위임의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공익법인 본래 목적의 수행 여부나 사업의 적정성, 공익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를 검증하고 권고 및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객관적·독립적·중립적인 별개의 조직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최근 비영리 시민사회단체(NPO)들에서도 이와 같은 공익법인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개정의 필요성은 더욱 더 대두된다 하겠음.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별도의 '공익위원회(Public Commission)' 조직을 구성하여 주무관청의 역할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참조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익법인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익성에 부합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이 위원회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와 활성화에 이르기까지 공익법인의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고 법인으로 하여금 사회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지원 및 사후관리까지 전담하는 시민공익위원회와 그 지부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민공익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을 규정하고, 시민공익위원회 위원의 겸직금지 및 결격사유 등 위원의 임면 조건과 위원회 임직원이 지켜야 할 비밀누설금지의 의무와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라. 시민공익위원회의 회의 방법과 사무처의 설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마. 시민공익위원회에 공익법인의 허가 및 취소권과 공익법인에 대한 감독 및 감사 권한을 부여하고, 공익법인 설립허가 취소 시 공익법인의 청문절차를 보장함(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바.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익성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그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성 여부를 의결함(안 제21조).

사. 시민공익위원회의 활동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안 제22조).

아. 기부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안 제23조).

자. 공익법인 설립·운영을 위한 정관의 기재사항과 임원의 임면, 이사회 운영과 감사의 역할 등을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재산운용 원칙과 예산 및 결산 의무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의무를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차. 법인이 지정기부금 모집 내역과 지출 결과를 시민공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전 시민공익위원회로부터 공익성 승인을 받아 그 의결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5조).

카.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조세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법률적 지원을 위한 지원단을 설치함(안 제36조 및 제37조).

타. 공익법인이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을 마련함(안 제38조).

CAPITAL

해외사례

영국

영국의 경우, 특정 정부부처에 속하지 않은 독립적인 국가기관인 공익위원회(Charity Comission)가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자선단체(Charity)를 등록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위원회의 예산은 전액 국고의 지원을 받으며 장관이나 정부부처로부터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매년 국회에 성과를 보고하여야 함. 잉글랜드와 웨일스의 자선단체는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공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소규모 자선단체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고 재산이 많지 않아 등록이 면제됨,

일본

일본의 경우, 종전에는 각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2006년에 「공익사단법인 및 공익재단법인의 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일반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총리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진 "공익인정등 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즉,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행정처분의 권한은 가지고 있으나, 공익법인의 공익성 인정 등 실질적 판단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인 "공익인정등 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주무관청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투명한 관리·감독을 위한 총괄기구인 '시민공익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은 공감하나 위원회의 역할, 구성원, 설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고, '공익목적사업'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따른 특수법인과 충돌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공익법인은 기부금품 모집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기부금관리정보는 시민공익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야하는 등 이중적 규제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금품법상 특례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시민공익위원회는 업무수행체계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설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현행처럼 주무관청제를 유지하되 각 수행단계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31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전용기·고용진·권칠승·김남국·김승원·김정호·김주영·박광온·박홍근·서삼석·송갑석·양향자·오영환·이수진·이원욱·임오경·장경태·최혜영·허영·홍정민 의원 (20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04. 제안
2020.06.16.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지난 1분기(1~3월)의 실업자는 117만 2천명, 일시휴직자는 160만 7천명을 기록했고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동월대비 20.2%, 실업급여 지급액은 40.4% 폭증함.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교육(-26.3%), 오락·문화(-25.6%), 의류·신발(-28.0%), 음식·숙박(-11.2%) 등에 대한 지출이 감소하여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음.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발길이 끊기자 영업시간 단축, 직원 감축, 그리고 휴·폐업 등을 선택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영업시간의 단축이나 임시 휴업을 통해 시급한 인건비나 재료비, 전기세 등은 줄일 수 있지만 유독 '상가임대료'만큼은 감당하기 어려워 임대료 연체와 퇴거 위협이 도래할 가능성이 큼.

실제로 지난 5월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1월 말 이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86.8%에 달했으며 이 중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62.8%였음. 또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영비용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임대료라는 응답이 38.5%로 가장 많았고 대출이자(21.9%), 인건비(18.0%), 세금(10.3%) 등 순으로 뒤를 이었음.

해외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된 미국의 30여개 주정부와 독일, 프랑스, 스페인, 호주 등 유럽 국가(정부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주택 임차인에 대한 한시적 퇴거금지 조치 및 계약 자동연장, 임대료 지원정책을 비상조치로 채택해 시행하고 있음.

독일은 2020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당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해도 집주인이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긴급 법안을 시행하고 있음. 스페인은 코로나로 인한 비상사태 기간과 비상사태 종료 이후 6개월 동안 주택 퇴거를 금지하고, 비상사태 기간 동안 만료되는 임· 계약은 자동연장토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정난을 겪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6년 내지 10년에 걸쳐 0% 이율로 갚도록 하는 소액 대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주요내용

현행법에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 코로나 비상 시기에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상가임대료 고충을 덜어주려는 것임(제10조의9 신설).

해외사례

미국

미국 의회는 2020년 3월 27일 「CARES(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를 통과시켰음.

이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등 적용대상주택의 임대인은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4일 동안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퇴거조치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차임 미납과 관련한 수수료·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으며, 퇴거통지를 한 날부터 30일 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음.

한편, 「CARES Act」는 임대인에게는 대출상환을 독촉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을 제공하는 등 임대인 보호 조치 역시 규정하고 있음.

그 외에도 다수의 주와 지방 정부는 퇴거 통지나 조치를 금지하고, 법원의 퇴거 심의회, 명령 집행 및 판결을 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독일

「민사, 파산 및 형사소송법상 코로나19 전염병의 영향 완화를 위한 법률」에 2022년 6월까지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한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서는 주택 및 상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해지제한을 주장하는 임차인은 차임 미지급의 원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야 함.

영국

국가비상사태 중에는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서의 신규 퇴거조치를 중단하는 긴급법률(「Coronavirus Act 2020」)을 시행함.

이에 따라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는 임차인의 임대료 체납 시 임대인이 임차유형에 따라 2주, 4주 또는 2개월의 기간을 두고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통지할 수 있었던 것을 3개월로 연장하고, 국가비상사태 중에는 법원에 접수된 명도소송(possession proceeding) 절차도 개시되지 않도록 하였음.

프랑스

동계기간인 11월부터 3월까지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강제퇴거를 금지하는 제도인 '트레브 이베르날(Treve hivernale)'을 5월까지 2개월 연장했으며,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임대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일본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법률을 개정한 바는 없으나, 임대인의 자발적인 차임 감면 등에 대해서는 세제감면 또는 급부금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중임.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나, 개정안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를 특례대상규정에서 배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점포 임차 시 임차보증금과 별도로 설비·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을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적용 범위를 제10조의4제1항 단서로 확대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며,개정안은 위기상황에 따른 특례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본칙보다는 부칙 개정을 통해 입법화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법원행정처

코로나19로 인하여 가계 부담이 극심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계약갱신을 보장하고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제한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차임연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것임이 소명되면 연체 횟수에 관계없이 특례기간에는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568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기동민·민병덕·박정·이소영·이학영·전용기·정성호·정춘숙 의원 (9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2020.06.17. 상임위 회부
2020.07.1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에서는 보험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보험금청구권자가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에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진행 등을 이유로 지급 여부에 대한 유보적 회신을 지속하다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 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결정 등의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시효를 연장하고, 시효 정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주요내용

보험금청구권 등에 대한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보험회사로부터 그 지급 여부에 대한 확정적 회신을 받을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62조).

해외사례

국가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호주	개별 계약에서 권리행사기간 결정, 보험금청구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한 소멸시효 기간은 없음
아르헨티나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년. 다만, 소비자가 권리자인 경우에는 3년,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안 때부터 1년, 근로재해와 관련하여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2년 또는 근로계약 종료시부터 2년, 재보험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시효 기간 없음
버뮤다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6년
브라질	일반적으로 1년
캐나다	주마다 다름. 예컨대 온타리오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권의 존재가 발견된 때부터 2년이지만, 화재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는 1년임
중국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은 5년
프랑스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은 10년, 재보험은 5년
독일	보험금청구권 발생 후로서 보험금청구권의 존재를 안 때가 속하는 연도말로부터 3년
홍콩	일반적으로 6년. 계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인도	보험계약으로 정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3년
인도네시아	보험계약으로 정하지만, 아무런 정함이 없으면 민법상 소멸시효 기간(30년) 적용
아일랜드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6년
이탈리아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2년
일본	3년(계약으로 단축할 수 없음)
케냐	보험계약에 따라 정하지만 일반적으로 3년
쿠웨이트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3년. 해상보험의 경우는 2년
말타	손해보험의 경우 범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2년,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지급의무는 5년
멕시코	일반적으로 2년, 생명보험은 5년
뉴질랜드	일반적으로 6년
노르웨이	일반적으로 3년, 자본보험(capital insurance)과 종신연금보험은 10년
러시아	재산보험은 2년, 생명·신체 또는 타인의 재산에 관한 보험은 3년

SAMPLE

사우디아라비아	자동차강제책임보험은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다른 보험은 5년
싱가포르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로부터 6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3년,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함
스페인	손해보험은 2년, 생명보험은 5년
스웨덴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10년. 비즈니스 보험(insurance policy)의 경우에는 1년으로 단축될 수 있음
스위스	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2년(계약으로 단축 불가), 재보험계약은 보험금청구권 발생 시부터 10년(계약으로 변경 불가)
대만	권리 행사 가능한 때부터 2년
태국	손실(loss) 발생 시부터 10년
터키	일반적으로 보험금지급의무 이행기 도래 시부터 2년 또는 보험사고 발생 시부터 6년. 책임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10년
아랍에미리트 연방	일반적으로 3년
영국	특별한 규정이 없고, 계약 위반에 관한 6년이 적용됨
미국	주별로 다름
베트남	손실(loss) 발생 시부터 2년

출처: 권영준,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보험연구원, 2017. 9, pp.71-72.
(Thomson Reuters의 『Practical Law』에 소개된 내용을 요약·번역한 것)을 수정함.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

보험금청구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면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이지만,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도 보험금등 청구의 시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법무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보험금청구권에 단기시효를 규정한 취지, 대법원 판례가 기산점 법리를 통해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주요국 입법례에 비추어 볼 때 현 소멸시효 기간이 현저히 단기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571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강준현·기동민·민병덕·이소영·이학영·전용기·정성호·정춘숙 의원 (9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6. 제안
2020.06.17.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분할·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 및 신주발행에 갈음한 자기주식 교부행위는 분할·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가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게 하는 등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고 있음.

특히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됨.

주요내용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하여 신주의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하여는 신주발행 뿐만 아니라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8 신설).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회사 분할 시 자기 주식을 이용한 지배구조 왜곡이 발생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기주식에 신주배정 자체를 금지할 것인지, 소각의무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의결권 행사만 제한할 것인지 등의 구체적 규제방안에 관하여 정부의 지주회사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경제정책적 조율을 거쳐 정부의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631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강준현·박영순·서영석·어기구·윤재갑·이수진·이용선·이탄희·정필모·조오섭 의원 (11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7. 제안
2020.06.18.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 및 운영을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진, 주주, 근로자 등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규율하는 체계를 의미하는바,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뿐만 아니라 이사에 대한 감시와 통제, 소수주주의 권리보장 논의 등이 모두 기업지배구조 개선문제와 관련되어 있음.

그런데 세계화·정보화시대의 도래는 기업 간 경쟁을 과열시켰고, 이에 국내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는 기업지배구조의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실제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재벌과 대기업의 지배구조 문제 때문에 장기 투자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 경제가 저평가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진단하고 있음. 또한 한국은 재벌 총수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이는 단기투자 차익 위주로 주식시장이 돌아가는 요인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건전한 투자환경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 등도 내놓고 있음. 하지만 경영진의 책임성 확보 및 주주의 권리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개선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2인 이상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제 의무화, 이사 해임 요건 완화 및 주주의 부적격 이사에 대한 해임요구권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종전의 기업지배구조를 탈피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기업의 경영 여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코스피 3000시대를 열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의견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집중투표제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중투표제 청구 요건을 완화하고, 종전에 회사의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실시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여 집중투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안 제382조의2 및 제542조의7).

나. 이사의 임기 상한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이사 해임의 결의요건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서 보통결의로 완화함으로써 이사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와 통제를 꾀함(안 제383조 및 제385조).

다. 주주가 이사가 횡령·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었거나 분식회계에 관여한 경우 등 부적격 이사의 해임·직무정지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이사해임 안건에 관한 주주의 권리를 단독주주권으로 법에 명시하고, 이사가 주주가 제안한 이사해임·직무정지의 건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85조의2 및 제635조제1항제21호).

라.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의 소제기 청구를 받고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지체 없이 주주에게 알리도록 하는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대표소송의 제소요건과 관련하여 주주가 대표소송 제기 후 합병 등으로 주주의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송이 계속되도록 요건을 완화하며, 대표소송을 청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의 소송참가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표소송제도를 보완·개선하여 대표소송을 활성화함(안 제403조 및 제404조).

마. 자(子)회사의 이사의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母)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함으로써 이사의 민사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인 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을 활성화하여 이사의 책임 경영을 꾀함(안 제406조의2 및 제542조의6제6항).

바. 사외이사의 경우 최대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은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중립적인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회사 및 계열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 등으로서 이사회의 독립·감시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결격 요건을 확대하며,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각 1인 또는 복수의 후보자를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자 각 1인은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여야 함(안 제542조의8).

사. 의무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 중 적어도 1명은 현직 이사가 아닌 자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 선임단계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이 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함(안 제542조의12).

아. 일정 주주 수 이상의 상장회사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게 함으로써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함(안 제542조의14 신설).

관련판례

"어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소유하여 양자간에 지배종속관계에 있고, 종속회사가 그 이사 등의 부진정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는 상법상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고, 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은 책임추궁을 당하여야하는 이사가 속한 당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종속회사의 주주가 아닌 지배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03조. 제415조에 의하여 종속회사의 이사 등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는 이른바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다49221 판결)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입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음('20. 6. 11.).

SAMPLE

정무위원회

6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1143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박정·권칠승·박성준·송옥주·유동수·윤후덕·이성만·이형석·전해숙·정성호·허영·홍기원 의원 (12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29. 제안
2020.06.30.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오지 않고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서면투표와 전자투표가 있는데, 서면투표는 회사의 정관으로, 전자투표는 이사회의 결의로 의결권 행사요건을 정하고 있음.

전자투표와 서면투표 모두 주주의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하는 동일한 취지이나, 서면투표를 하려면 회사의 정관에 관련 사항이 없거나 지나치게 요건이 강한 경우에 이를 포함하거나 완화하려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자투표의 이사회의 결의(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보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를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서면투표의 채택이 어려운 현실임.

주요내용

서면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에 전자투표와 동일하게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의결권행사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368조의3제1항).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서면투표제 채택 여부를 전자투표제와 동일하게 이사회 결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면을 통한 주주 의결권 행사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고, 양 제도의 정합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7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040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김민기·남인순·도종환·박정·서영교·안민석·윤관석·이원욱·이정문·임종성·황희 의원 (12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01. 제안
2020.06.16.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낮게 유지되고 있는 시중금리에 비해 매우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더욱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법의 최고이자율보다 높은 연 27.9%의 금리를 적용하여 법적 형평성·일관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금리의 상한을 연 20%로 하향 조정하고, 이자총액은 원본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이자가 있는 금전대차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이 법을 따르도록 일원화하여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확립하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신설 등).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법무부는 최고이자율 규율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이자제한법」 상 최고이자율은 공서양속 위반의 평가를 법 제도에 표현한 결과로서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반하여 무효가 되는 금리 수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영업성 여부 및 주체를 불문하고 사회 전반의 금전대차 거래에 동일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으나, 다만 등록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 등 현행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분야에 대해 동시에 연 20%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최고이자율 일원화 자체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대부업법」은 금전대차 중 채권자의 특성에 주목하여 채권자가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이자를 규율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일반법인 「이자제한법」상 규정으로 특별법에서 규정한 이자율의 상한을 제한하는 것이 법체계상 부합되는지 의문이며, 대부업 등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하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원화하여 규제하는 입법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입법취지에는 동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자제한법」을 적용받는 사인간 거래와 「대부업법」을 적용받는 금융거래 시의 최고금리 격차에 따른 규제차익 우려는 현행 조항 체계에서도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므로 법체계 변경의 실익이 크지 않고, 기본적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각각 입법목적이 상이하며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금리 규제는 금융정책과 금융시장 상황이 최우선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어 금융정책을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에 맞는 제도적 수단이 존치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	17. 노후도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1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2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0.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3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52.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5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6.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SPECIAL PAGE

법제사법위원회

8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강은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77
제 안 자 정의당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 의원 (6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남국·김용민·신정훈·윤재갑·이용빈·황운하 의원 (7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0. 제안
2020.06.29. 상임위 회부
2020.09.10.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세월호 참사 및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석탄화력발전소 김용균 사망사고,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 광주 파쇄기 협착 사망사고 등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 또는 보건상 위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재해 사건은 특정한 노동자 개인의 위법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환경,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조직문화, 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해버리는 사회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

이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위험을 제대로 예방하고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기업범죄'임을 인식하게 하고, 기업이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부담해야 할 사고처리비용이 예방을 위한 투자비용을 압도하도록 만들어야 함. 이를 통해 기업 등이 경제적·조직적·제도적으로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필요함.

그러나 현대 기업의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책임을 아래로 위임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과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법인과 결정권자인 경영책임자에게 현행법상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따라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책임을 묻고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미봉되어 버림.

법인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 개별법에 과태료나 벌금 부과 규정이 존재하지만 이들 규정은 애초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을 예정한 규정이 아니어서 중대재해 발생 시 벌금액조차 피해에 비해 극히 과소한 형편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법인에 선고된 평균 벌금액은 약 448만원 수준임. 또한 김용균 사망 이후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재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크게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음.

나아가,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의식적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로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의 해석을 통해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움.

이와 같은 현행 형사법 체계는 기업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관할하고 지배하는 경영책임자가 재해의 위험을 평가 절하하도록 유도하는 등 결국 사회 전체적으로 재해사고의 위험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옴. 영국·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도화하고 있음.

이에 기업 등이 사업장이나 불특정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관리·보건위생상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기업 그 자체에 대한 형사책임, 감독 또는 인·허가 권한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형사책임, 나아가 기업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및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그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하여 종사자나 이용자 등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할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3조).

나.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제3자와 공동으로 제3조의 유해·위험방지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다.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형사처벌하며, 해당 법인 또는 기관에게도 별도로 벌금을 부과하고 허가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유해·위험방지 감독 또는 건축 및 사용에 대한 인·허가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로서 해당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7조).

마.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유해·위험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이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데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는 적정한 형의 선고를 위해 유죄 판결과 별도로 형의 선고를 분리하는 양형 절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둠(안 제8조).

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종사자 또는 사용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등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에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분쟁에서 입증책임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함(안 제11조).

사.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망 등 중대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법인, 기관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함(안 제12조).

관계기관 의견

국회입법조사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유해·위험방지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져 사실상 결과책임을 인정하게 될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될 뿐 아니라,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할 것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에서는 사업주에 대해서 제정안과 동일한 취지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의무를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9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329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선우·신동근·유정주·이수진·이인영·임종성·전용기·전해철·의원 (9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1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0. 제안
2020.06.16. 상임위 회부
2020.07.27.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2020.08.25. 상임위 상정/소위회부

제안이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신용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 자동차 연비표시 조작 사건, 라돈침대 사건, 자동차 주행 중 화재 사건 등을 계기로, 대량 생산·대량 소비 및 정보산업 시대에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효율적인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도모하고, 기업의 위법행위 예방 및 책임 이행 노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보호 수준을 높임과 아울러 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여 국가·사회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함.

현행 증권 분야 외에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다른 분야에도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단소송절차를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 및 목적조항 개정(안 제1조 등)

i) 도입분야별 집단소송절차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여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고자 함.

ii) 확대도입 내용에 따라 법률 제명과 목적조항을 개정함.

나. 증권 외의 분야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안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i) 집단적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크고 집단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긍정될 수 있는 분야에 확대 도입함.

ii)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6조제1항제1호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4호(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제29조 위반을 이유로 한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된 것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위치정보사업자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위치정보가 누출, 변조, 훼손된 것 등을 이유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식품 등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에 집단소송제를 적용함.

다. 증권 분야 적용범위 확대(안 제3조제1항제1호)

i)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도입 이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개념 도입 등의 법제도 변경사항과 집합투자 활성화 및 공시제도의 중요성을 고려한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증권 분야 적용대상을 확대함.

i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위반 행위로 인한 제64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2조에 따른 공개매수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도록 함.

iii)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중에서 집단소송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집단소송제가 적용되도록 함.

라. 관할 개선(안 제4조)

동일 사건임에도 피고별로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자 피고 보통재판적 전속관할을 삭제함.

마. 소송대리인 선임 요건 개정(안 제5조)

i)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소송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측의 변호사 선임의무를 삭제함.

ii) 예시 문언이 소송상 쟁점화되어 무익하게 허가재판의 지연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고측 소송대리인 선임이 제한되는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 된 증권을 소유하거나, 그 증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의 예시 부분을 삭제함.

바. 법원의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 제출사실 및소송허가 결정의 통보대상 확대, 공고기관 반영(안 제7조제4항 및 안 제19조)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따라 피해자의 제외신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통보대상 기관에 제3조 각 호의 법률소관기관을 추가하고, 통보를 받은 기관은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도록 함.

사. 원고측 소송대리인 요건 개선(안 제11조)

피고측 소송대리인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원고측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3건 이상 집단소송에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 관여한 경력 제한을 삭제함.

아.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 개선(안 제12조)

증권 외에 금융투자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증권 분야와 관련한 개정 내용과 확대 도입되는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원의 다수성 요건 중 "구성원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합계가 피고회사의 발행 증권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일 것"을 삭제하고 "50인 이상"으로 단일화함.

자. 문서제출명령 거부 대상에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관련 자료 포함(안 제32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제56조의 손해배상청구에 집단소송제가 적용됨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관하는 기관에 진술하거나 제출한 자료를 추가함.

관련판례

	사건내용	피고	공고 (사건번호)	경과
1	진성티이씨 정기보고서 허위기재	진성 티이씨	'09. 4. (수원지법 2009가합8829)	▸'10. 2. 소송허가결정 ▸'10. 4. 화해허가결정 ▸'12. 1. 분배종료
2	한화스마트 ELS 만기일 종가조작	로열뱅크오브 캐나다	'10. 12. (서울중앙 2010가합1604)	▸'12. 5. 소송불허가결정 ▸'15. 4. 대법원(재항고) 파기환송 ▸'15. 11. 소송허가결정 ▸'16. 3. 대법원 소송허가 확정 ▸'17. 2. 화해허가결정 ▸'17. 4. 분배계획안 인가 ▸'19. 5. 분배종료
		한화증권	'11. 12. (서울남부 2011가합23003)	
3	씨모텍 증권신고서 허위기재	동부증권 외	'11. 10. (서울남부 2011가합19387)	▸'13. 9. 소송허가결정 ▸'16. 11. 대법원(재항고) 소송허가 확정 ▸'18. 7. 13. 1심 판결(일부인용·피고 책임 10% 인정) ▸'19. 2. 15. 항소심 판결(항소기각) ▸'20. 2. 27. 상고심 확정(일부인용)
4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ELS	도이체방크 외	'12. 3. (서울중앙 2012가합17061)	▸'16. 2. 소송허가결정 ▸'16. 6. 대법원(재항고) 소송허가 확정 ▸'17. 1. 본안 1심 판결(인용) ▸'17. 7. 항소취하(확정)
5	GS건설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GS 건설	'13. 10. (서울중앙 2013가합74313)	▸'15. 2. 소송허가결정 ▸'16. 6. 대법원 소송허가 확정(재항고 기각) ▸'19. 7. 19. 1차 변론 기일(예정)
6	진매트릭스 시세조종	장철	'13. 12. (서울남부 2013가합10785)	▸'18. 8. 22. 소송허가결정 ▸'18. 8. 27. 등 항고 ▸'18. 11. 20. 소송허가 확정 ▸'19. 1. 22. 화해 종결(1,342명; 14억9,077억원) ▸'19. 3. 12. 분배계획안 인가
		진메트릭스	'13. 12. (수원지법 2013가합26404)	
		유왕돈	'13. 12. (서울서부 2013가합35856)	

SAMPLE

7	동양그룹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부정거래행위	㈜동양·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사업보고서 허위기재)	´14. 06. (서울중앙 2014가합31627)	▸´16. 9. 소송불허가결정 ▸´18. 7. 5.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19. 10. 28. 서울고법 허가결정 ▸´20. 3. 25. 소송허가 확정
8	동양그룹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및 부정거래행위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부정거래행위)	´14. 07. (서울중앙 2014가합30150)	▸´18. 1. 5. 불허가결정 ▸´18. 1. 26. 즉시항고
9		삼일회계법인	´16. 01. (서울서부 2016가합30418)	▸´16. 4. 대표당사자 선임결정 ▸´18. 11. 20. 소송불허가결정(12.4. 확정)
10	STX 조선 사업보고서 허위기재	STX 조선	´17. 09. (서울중앙 2015가합9047)	▸´17, 11, 23, 대표당사자 선임결정 ▸ 허가재판 진행 중

해외 입법례

(1) 미국 –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

○ 의의 ①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다수인을 대표하여 1인 또는 수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그 판결의 효과는 집단에 속하는 전원에게 미치도록 하는 소송
②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따라 시행되며 집단 구성원이 복수의 주 출신이거나 연방법 관련 문제인 경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FRCP 제23조).

○ 형태 위법행위의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 소제기요건 ① 집단 구성원이 너무 많아 공동소송이 비현실적일 것
②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쟁점이 있을 것
③ 대표당사자의 주장과 항변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주장과 항변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
④ 대표당사자는 집단 구성원 전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을 것

○ 소송절차 ① 법원은 집단 소송 허가여부를 결정
②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법원은 소송의 성격 및 제외신청권리 등을 구성원들에게 고지할 것을 명함.
*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의 경우, 집단 구성원이 신청에 의해 집단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외신청권리(opt-out)를 인정

○ 판결의 효력 법원이 집단구성원으로 정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손해배상형 집단소송에서 제외신청을 한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음.

○ 배상금의 분배 피고측이 출자한 자금에 의해 조성된 구제기금을 각 구성원에게 분배

(2) 독일

○ 단체소송 개관 개별 법규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집단피해 구제소송을 수행

○ 법률서비스법(RDG) 및 민사소송법(ZPO)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RDG 규정(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일정한 소비자단체(소비자센터 및 기타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소비자단체)는 업무 범위에서 소비자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아 재판외에서 채권을 추심하거나 소비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채권을 주장하는 것을 허용(제2조제2항, 제8조제1항제4호)
- ZPO 규정(Zivilprozessordnung)
  소비자단체는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이나 양도받은 채권을 스스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제79조제1항제2문).
- 결론
  결국 위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가 다수의 소비자로부터 추심을 위임받거나 채권을 양도받아 일괄하여 소구하는 집합소송 가능
  * 다만, 독일법원은 개인소비자가 스스로 소를 제기하기 어려울 만큼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재판상권리를 행사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여 위 규정에 의한 단체의 손해배상청구 인정에 소극적

SAMPLE

○ 부정경쟁방지법상 이득환수청구권(UWG: Gesetz gegen denunlauteren Wettbewerb)

- 제도도입
  기존 소비자단체의 UWG 위반행위의 금지청구소송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부당이득환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UWG를 개정하여 소비자단체의 이득환수청구권 도입
- 요건
  ① 사업자의 고의에 의한 위법행위
  ② 사업자에게 이득 발생 ③ 다수 구매자의 부담 ④ 인과관계
- 주체
  자격 있는 소비자단체, 영업 및 자영업이익촉진단체, 상공회의소, 수공업회의소
- 효과
  이득의 국고 귀속
- 비용상환청구
  소비자단체는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정부에 청구

(3) 일본 – 소비자집단소송제도

○ 제도도입 2013년 12월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효율적 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특정적격소비자단체가 공통의 무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절차특례법｣ 제정 (※ 3년 내 시행령에서 정한 시기부터 시행)

○ 구조 제1단계 절차인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제2단계 절차인 대상채권의 확정절차로 구성

(4) 프랑스(소비법전, code de la consommation)

○ 사소권(action civile)

- 개념
  사업자가 위법행위로 소비자의 집단이익(소비자들의 개별적 이익의 합산이 아니라 추상적 소비자 집단의 손해를 의미)에 손해를 초래하는 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사소당사자로서 그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소비자단체일 것,
  ②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의 형벌 규정을 위반할 것
- 형태
  민사법원 뿐만 아니라 형사법원에 검찰이 제기한 공소에 참가하는 형식으로도 가능
- 효과
  사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얻은 손해배상금은 승소한 소비자단체에게 귀속되며 개별 소비자에게 분배할 필요 없음.

○ 소송참가(intervention en justice)

- 개념
  소비자단체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여 소비자의 집단이익에 관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소비자단체일 것
  ② 추상적인 소비자 전체의 이익에 손해가 발생할 것
  ③ 사업자가 소비자보호법상의 비형벌 규정을 위반할 것
  ④ 소비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할 것
- 효과
  사소권의 행사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얻은 손해배상금은 승소한 소비자단체에게 귀속되며 개별 소비자에게 분배할 필요 없음.

○ 공동대리소송

- 개념
  소비자단체는 동일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복수의 소비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구별
  ① 추상적 소비자의 집단이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SAMPLE

개별적 이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사소권 및 소송참가와 구별,
② 사업자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할 필요가 없는 점에서 소송참가와 같고 사소권과 구별

- 요건
① 주체가 인가된 전국규모의 소비자단체일 것
② 동일한 사업자 행위로 발생한 동일한 원인에 기해 피해를 입은 2인 이상 소비자의 소송 수행권 위임이 있을 것

- 효과
승소한 경우 손해배상금은 소비자단체가 아니라 수권한 소비자에게 귀속

(5) 영국

○ 개관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규칙(Civil Procedure Rules)에 따라 '참가신고형(Opt-in 방식)' 만이 인정, 예외적으로 2015년 공정거래법 분야에 한해 미국식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제도를 도입

○ 참가신고형 제도(그룹소송･통합소송: group litigation)

- 의의
2000년 민사소송규칙은 법원의 통합소송명령(Group Litigation Order)에 따라 공통 또는 관련 있는 사실상･법률상 쟁점을 발생시키는 다수의 청구를 통합하는 소송절차를 규정

- 기본절차
① 당사자(원고･피고) 신청 또는 법원 직권에 따른 통합소송명령으로 개시,
② 통합등록부에 통합되는 청구 및 당사자를 등록,
③ 통합소송을 심리할 관리법원을 지정･이송,
④ 판결의 효력은 그룹에 등록된 모든 당사자를 구속

○ 제외신고형 제도(집단소송: opt-out collective proceedings)

- 제도도입
경쟁법 분야 소비자･기업의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2015년 1월 부당공동행위･거래상 지위남용행위금지 위반에 한정한 제외신고방식의 집단소송 도입, 2015년 1월 Consumer Rights Act of 2015의 제정을 통해 Competition Act of 1998을 개정

- 대표당사자
집단의 일원 또는 경쟁항소법원(the Competition Appeal Tribunal)이 대표당사자로 인정하는 자

- 대상
경쟁법(Competition Act of 1998) 상 부당공동행위(담합)･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금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위반행위 금지청구

- 절차
경쟁항소법원의 전속관할로서 대표의 적절성, 사안 쟁점의 공통성 등 집단소송 허가절차를 거쳐 진행

관계기관 의견

법무부

집단적 피해구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현행 증권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나, 그 활용가능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사항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보아 별도의 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에 있으므로, 이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원행정처

집단소송의 적용범위 확대에 관하여 제도의 목적 및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고, 소송절차의 개선에 관하여 부당공동행위의 자진신고자 및 조사협조자가 그 조사절차에서 제출한 문서를 문서제출명령의 예외로 두는 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26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준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452
제 안 자 **무소속** 홍준표·권성동·윤상현 의원 (3인)
미래통합당 김은혜·박성중·배현진·백종헌·유경준·이종배·정경희·홍문표·홍석준 의원 (9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12. 제안
2020.06.29. 상임위 회부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급등, 무분별한 재건축사업의 추진 등 부동산 시장의 과열 현상이 나타나자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 및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2006년에 제정된 것으로, 이후 2008년에 주택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였다가 2018년부터 다시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가 주택시장의 안정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재건축초과이익이라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재건축부담금과 함께 재산세·양도소득세 등도 부과됨에 따라 이중부담이라는 비판도 있음.

또한,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도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과 같이 한시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재건축부담금을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해당 유예기간동안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및 국민의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관련판례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개발비용, 정상주택상승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혹은 부담금은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적법하다고 판시1) 되었으며, 최근 헌법재판소에서도 재건축부담금은 국민으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조세와는 그 목적과 기능이 구별되므로 재건축부담금은 조세가 아닌 부담금에 해당되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는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으며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음. 2)

1) 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판결 :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인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는 입법정책상의 문제라고 판시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14. 7. 25. 선고 2013아1039 판결 : 재건축부담금이 전문기관조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므로 미실현이득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정당하고 판시하였음.

2)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4헌바381 판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담금 징수), 제5조(대상), 제7조(부과기준), 제9조(가액산정)는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

관계기관 의견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으로 발생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주택시장의 안정, 주거복지 향상 등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의 사유화 방지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정상적인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SAMPLE

국토교통위원회

2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주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0891
제 안 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고영인·기동민·송기헌·송재호·신정훈·위성곤·윤준병·임호선·정필모·진선미·한병도·홍익표 의원 (13인)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0.06.23. 제안
2020.06.29. 상임위 회부
2020.09.08. 상임위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제안이유

혁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지정해 수도권으로부터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이전지역의 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지정·조성되었음.

그러나 혁신도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이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의 촉진을 위해서는 일회성의 공공기관 이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전 이후 지역 외부로부터 공공기관 연관산업의 지속 유치를 통한 기업의 유입 및 확장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현행법은 이를 위한 실질적 유인책 및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과 연관된 산업 분야의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한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지속발전 및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45조의6 신설).

관계기관 의견

국회사무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이 일정 규모 조건을 충족하는 지점을 설립하여 기존의 지역 업체들과 경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본점소재지가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들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으며, 지역업체를 우대하고자 하는 현행 계약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한건설협회

복수의 지역에 일정 규모 이상의 지점을 설립할 수 있는 대기업만이 우대 대상으로 한정되어 대기업 우대정책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임.

SAMPLE

법제사법위원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민사소송법」 상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집단적 분쟁에 대하여 개인이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것 이외에 다수의 당사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① 다수의 피해자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소송(제65조)'이나, ② 피해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자신의 권한을 위임하여 대표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선정당사자 제도(제53조)'가 있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불량식품 유통 등 피해액이 소액이면서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승소하여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이 소액인 반면,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 소송에 대한 부담은 커서 피해자가 개별적인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하게 되며, 사업자도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 없이 사업을 계속하여 유사 사건이 재발하는 등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방안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와 같은 공동소송, 선정당사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액·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집단적 분쟁의 효율적 해결과 사업자 등의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구성원 중 1인 또는 다수의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여 대표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케 하되, 판결의 효력은 구성원 모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와, 개별법에 의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가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수행케 하는 단체소송제도가 논의되었음.

이 중 단체소송은 사업자 등에게 권리침해행위의 금지·중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손해배상청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어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보이나, 집단소송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민사소송법상의 특례라고 볼 수 있고, 이해당사자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구제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소송허가요건의 엄격한 심사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그 적용범위도 증권 관련 영역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의 범위를 확대하고, 소송허가요건 등 소송절차를 개선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개정안 주요 내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현행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대표발의)	**공정거래관련 집단소송법안** (전해철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소비자집단 소송법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대상	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조물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제조물의 결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으로 금지하는 표시·광고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	소비자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개인정보처리업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전자상거래·할부거래·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소비자분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위반, 불공정약관조항, 부당한 표시·광고행위, 전자상거래·할부거래·방문판매로 인한 피해
원고 적격	대표당사자형	대표당사자형	대표당사자형	대표당사자형	단체소송형
소송 구조	제외신고형 (opt-out)	제외신고형 (opt-out)	제외신고형 (opt-out)	제외신고형 (opt-out)	참가신고형 (opt-in)
소송 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1단계 : 책임확인소송 2단계 : 책임확정소송
분배 절차	공동분배 (분배관리인)	공동분배 (분배관리인)	공동분배 (분배관리인)	공동분배 (분배관리인)	개별 집행

쟁점1. 집단소송의 확대 도입

찬성

1. 원·피고 사이에 다수의 개별적 소송 없이 단일한 집단소송절차에 의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 소송경제에 부합하고, 피해자들의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함.

   집단소송이 도입되면 원고 측에서는 소액의 피해를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피고 측에서는 많은 피해자들이 제기하는 개별 소송들을 방어하기보다는 집단소송에 대한 방어에만 집중할 수 있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소송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2.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음.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에 따라 예전에는 피해를 입고도 제소가 힘들었던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고, 그에 따른 사업자의 배상액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적절한 행위의 반복을 억제하게 되어 불법행위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반대

1. 집단소송에서의 판결의 효력이 민사소송법상의 기판력 체계나 처분권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음.

   현행 「민사소송법」 상 기판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이고, 처분권주의란 소송절차의 개시, 심판대상(소송물)의 대상 및 범위, 소송절차의 종결이 소송당사자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함.

   그러나 집단소송의 일반적인 형태인 제외신고형(Opt-out 방식) 집단소송은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 모두에게 집단소송의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는데, 이 경우 소송절차에 참가한 소송당사자(원·피고), 승계인이 아닌 자라도 그 기판력이 미친다고 볼 것이어서 민사소송법상 기판력 체계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구성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손해배상청구권이 행사된다고 볼 것이어서 해당 구성원의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임.

2. 남소에 따른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여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여지가 있음.

   집단소송은 개별 당사자들의 비용이 매우 적게 들기 때문에 패소에 대한 부담은 적은 반면 변호사는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어 남소의 여지가 있고, 집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는 등 기업들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음.

관계기관 의견

법원행정처

증권 외의 분야에 집단소송을 확대 도입하는 것이 다수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집단소송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안 제3조제9호안 제3조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는 「식품위생법」과 달리 '조리'를 별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조리'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SAMPLE

B&B Report

SAMPLE

Ⅲ. 국회본회의

1. 본회의 상정법률안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법률안목록

주요 법률안	법률안명
○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SAMPLE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의안번호 22103519
제 안 자 환경노동위원장

심사 진행 경과

상임위원회
2020.09.07. 상정/ 의결(대안가결)

법제사법위원회
2020.09.0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의결(원안가결)

본회의
2020.09.07. 원안가결

제안이유

감염병 확산 등 재난 상황 시 감염병 확진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학교 등의 휴원·휴교 명령 또는 등교·등원 중지 조치가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장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근로자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가족돌봄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4항제3호 신설).

나. 감염병 심각단계의 위기경보 시 가족이 감염병환자·감염병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는 경우, 자녀가 소속된 학교 등에 대한 휴업·휴교·휴원 명령 또는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학교 등에서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에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제5항 신설).

다.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7조제2항제6호).

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제2항제8호).

대안반영폐기 법률안(8건)

- [210017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3인)
- [210000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03인)
- [210258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 [210203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1인)
- [210234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임이자의원 등 10인)
- [210133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의원 등 11인)
- [210332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1인)
- [21028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등 12인)

주요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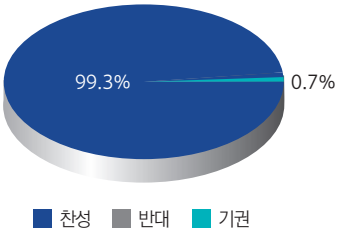
환경노동위원장대리 안호영



근로자의 가족돌봄 지원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감염병 등 심각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를 연간 10일, 취약계층인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15일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0. 09. 07 / 2020. 09. 07
- **발의자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표결의원** : 재석 269인 / 제적 300인
- **표결결과** : 원안가결 269인(찬성 267인, 반대 0인, 기권 2인)



찬성 267인

강대식·강득구·강민국·강민정·강병원·강선우·강은미·강준현·강훈식·고민정·고영인·고용진·곽상도·권성동·권인숙·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교흥·김기현·김남국·김도읍·김두관·김미애·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병욱·김병욱·김병주·김상훈·김상희·김선교·김성원·김성주·김성환·김수흥·김승남·김승수·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예지·김용민·김용판·김 웅·김원이·김윤덕·김은혜·김정재·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애·김진표·김철민·김태년·김태호·김태흠·김형동·김홍걸·김회재·김희곤·남인순·노웅래·도종환·류성걸·류호정·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민홍철·박광온·박대수·박대출·박덕흠·박범계·박병석·박상혁·박성민·박성중·박수영·박영순·박완수·박완주·박용진·박 정·박주민·박 진·박찬대·박형수·박홍근·배준영·배진교·배현진·백혜련·변재일·서동용·서범수·서병수·서삼석·서영교·서영석·서정숙·성일종·소병철·소병훈·송기헌·송석준·송언석·송영길·송옥주·신동근·신영대·신원식·신정훈·심상정·안규백·안민석·안병길·안호영·양경숙·양금희·양기대·양이원영·양정숙·양향자·어기구·엄태영·오기형·오영환·오영훈·용혜인·우원식·위성곤·유경준·유기홍·유동수·유상범·유의동·유정주·윤건영·윤관석·윤두현·윤미향·윤영덕·윤영석·윤영찬·윤재갑·윤재옥·윤주경·윤준병·윤창현·윤한홍·윤호중·윤후덕·윤희숙·이개호·이광재·이규민·이낙연·이달곤·이동주·이만희·이명수·이병훈·이상직·이상헌·이성만·이소영·이수진·이수진·이양수·이 영·이 용·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은주·이장섭·이재정·이정문·이종성·이주환·이채익·이철규·이탄희·이태규·이학영·이해식·이헌승·이형석·인재근·임오경·임이자·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제원·장철민·장혜영·전봉민·전용기·전재수·전주혜·전해철·전혜숙·정경희·정동만·정성호·정일영·정점식·정정순·정진석·정찬민·정청래·정춘숙·정태호·정필모·정희용·조명희·조수진·조승래·조오섭·조응천·조정식·조정훈·조태용·조해진·주철현·주호영·지성호·진선미·천준호·최강욱·최기상·최승재·최연숙·최인호·최종윤·최형두·최혜영·추경호·태영호·하영제·한기호·한무경·한병도·한준호·허 영·허은아·허종식·홍기원·홍문표·홍석준·홍성국·홍영표·홍익표·홍준표·황보승희·황운하·황 희

기권 2인

김희국·정운천

SAMPLE

1 2차 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일시 및 장소 2020.6.30., 이데일리 본사

참석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철 고문, 정호정 변호사
(국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문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주요내용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달러로 늘어나면 재원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후세에 경제적 부담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정호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엄청난 재정 소요를 위해선 결국 근로소득자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기본소득 수급자와 근로소득자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채무를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굉장한 갈등이 될 것"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다음 대선까지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질 것이나 기본소득 얼마를 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후보는 실패할 것.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가, 재정 개혁과 조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비전 능력을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

"지방을 가보면 지역 소멸이 진행되고 있다. 생존 불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드러났다. 20대에서 50대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

(재원 조성과 관련하여) "정치 철학이 예산을 결정한다.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누구에게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줘야 하는 만큼 이를 예산에 반영해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 IMF 위기를 겪은 한국에서 부채를 늘린다면 부정적 여론이 있을 수 있다. 부채 규모를 늘리지 않는 방향에서 기본소득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대 기본소득 논쟁은 다 불필요하고 정치 편향적인 논쟁. 사회보험 중에서도 고용보험은 오히려 양극화를 발생시킨다. 고용보험 가입률은 소득 (하위)1,2분위하고 5분위 이상하고 6배 이상 차이가 난다. 고용보험은 근본적으로 양극화를 해결하지 않으면 복지정책으로서는 기본소득과 비교할 수 없다. 고용보험은 안정적인 고용을 받는 사람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

최승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화두는 이미 정치권에 던져졌다. 대선 결과에 따라 속도 조절의 차이만 있을 것"

(정부 예산증가분을 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쓰자는 논의에 관해) "복지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자는 것. 예민한 증세 논의까지 더해져 엄청난 사회적 에너지가 소요될 것"

"지금도 '전국민 고용보험시대'를 외치고 있지만, 예술인과 플랫폼 노동자들이 우선순위에 꼽힐 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 시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복지"

최영준 연세대 교수



(기본소득제 필요성 관련) "성장의 핵심은 창의성인데 한국의 경우 창의적 노동의 비중이 낮다. 미래엔 반복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창의적 일자리만 남기 때문에 위기가 올 것. 기본소득이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전에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물줄기가 흘러왔는데 코로나19가 이 물줄기를 10배, 100배 속도로 흐르게 했다.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뉴 노멀'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 뿐만 아니라 정규직조차 언제 잘릴 지 모르게 된다"

"사람들이 30만원~50만원을 준다고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 오히려 안정감을 줘 하고싶은 일을 하게 될 것"

정철 국민대 교수



"복지가 한번 시스템이 되면 제도를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되고 이를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 이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기존 복지 기득권을 재조정하면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상당한 비판,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다"

"기본소득은 국가 재정으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인데 코로나 이후 저성장 시대로 들어서 세수가 줄면 지급액 등에서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기에 재정마련도 용이하고, 기존 복지체계와 결합도 쉬워 기본소득보다 현실 적응력이 높다"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거나 너무 많은 국채의 발행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할 수도 있다. 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실험이 전제돼야 한다"

10 2020년 7월 3일 금요일 포스트 코로나시대와 기본소득 이데일리

"기본소득, 대량실업 극복할 대안" vs "막대한 재원… 미래세대에 부담"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코로나19 여파로 정규직마저 고용불안 재난지원금, 경제활성화 효과 입증했듯 20~50대 노동생산성 높이는 데 도움될 것 차기대선 최대 화두… 포퓰리즘 활용 안돼

1인당 50만원씩 지급땐 300조원 필요 국가채무 눈덩이… 미래세대와 갈등 우려 수급자·근로소득자간 대립도 무시 못해 기존 복지 조정… 수혜자 저항 거셀 것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 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 보완이 좀 더 합리적 방향 -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신중론 제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 허영 "美알래스카 年1000달러 배당제, 생활수준 향상 효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기본소득 논쟁이 정치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2022년 차기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대부분의 이슈가 여야 입장에 따라 판이하게 갈리는 것과 달리 기본소득은 진보·보수진영 양 쪽에서 논의가 활발해 차기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와 이데일리 공동 주최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라운드 테이블에서 "다음 대선까지 기본소득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 의원은 "'기본소득 열차를 주겠다'는 식의 포퓰리즘 후보는 실패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 왜 중요한가, 재정 계획과 조세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할 내전 능력을 국민에게 소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원도 "기본소득의 개념과 방향성에 대한 화두는 이미 정치권에 던져졌다"며 "대선 결과에 따라 속도 조절의 차이만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술 진보로 일자리 감소 불가피… 기본소득 대안"

과거 기본소득은 기술 진보에 따른 대량 실업을 극복할 대안으로 꼽혔다. 누구에게나 일정 수준의 소득을 주면 사회적 약자를 신빙하는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 최저 생계를 보장할 수 있다는 논리다.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이 삶업에 기까운 어려움을 느끼자 다시 주목을 받았다.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 지급 △충분성 6가지 조건을 갖는다.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최 교수는 "성장의 핵심은 창의성인데 한국의 경우 창의적 노동이 비중이 낮다"며 "미래엔 반복적인 일자리가 없어지고 창의적 일자리만 남기 때문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젊은 세대의 창의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기본소득이 주어질 경우 근로 동기를 저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람들이 30만~50만원을 준다고 일을 그만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안정감을 줘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이전에도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큰 줄기가 흘러왔는데 코로나19가 이 물줄기를 10배, 100배 속도로 흐르게 했다"며 "제택근무나 온라인 교육이라는 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실천이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뉴 노멀'이 돼버렸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예술인뿐만 아니라 정규직조차 언제 잘릴지 모르게 된다"고 부연했다.

기본소득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허영 민주당 의원도 "지원을 가늠면 지역 소멸이 전행되고 있다"며 "생존 본안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드러났다"며 "20대에서 50대까지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기존 복지 기득권 재조정땐 입청난 저항 직면"

반면 현실적 어려움에 따른 반대 논리도 만만찮다. 막대한 재원 소요가 가장 큰 문제다. 1인당 5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9%에 달하는 300조원이 필요하다.

정철 국민대 교수는 "복지가 한번 시스템이 되면 제도를 중심으로 기득권이 형성되고 이를 권리로 인식하게 된다"며 "어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통합해 기본소득으로 대체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호정 변호사도 자유드론을 통해 "엄청난 재정 소요를 위해선 결국 근로소득자가 많이 부담해야 한다"며 "그렇다면 기본소득 수급자와 근로소득자의 대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결국 국가가 채무를 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에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공장한 갈등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도 "1인당 국민소득이 6만달러로 늘어나면 재원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우서에 경제적 부담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승재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겨울별 직접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 의원은 "재난지원금에서 보듯 일시적 경기 부양은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며 "전 국민에 재난지원금을 주기 보다 소상공인에게 국한해줘 했다면 수많은 사람이 폐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워 기자 re0709@

"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 보완이 좀 더 합리적 방향"

정철 국민대 법대 교수, 신중론 제기



"기본소득 도입은 매우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정철(사진) 국민대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기본소득은 우리나라 의사회보장제도, 헌법과 충돌할 여지가 큰 만큼 충분한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만약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뒤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도입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가 사회 변화에 맞춰 잘 발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크게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평생사회안전망으로 구성돼 있다"며 "1961년 생활보호법(공공부조) 시행을 시작으로 2014년 기초연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상황에 맞춰 적합하게 발달해왔다"고 전했다.

정 교수는 기본소득 도입이 사회보장제도와 충돌 또는 모순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제도를 증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수급자들도 대부분 기존 혜택에 추가로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 기존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기본소득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기본소득이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도 침해할 수 있다고 봤다. 헌법 제34조(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대표적이다. 그는 "헌법 제34조의 경우 기본소득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충돌 요소도 될 수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이 개인의 재산권 등을 제한해 인간다운 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며 "세금을 낼 수 있는 재산을 가진 분들의 희생이 있어야 실현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가에서 너무 많은 세금을 내게 하거나 너무 많은 국채의 발행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 다음 세대의 삶을 송두리째 부너지게 할 수도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보다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다. 또 기본소득을 도입하더라도 충분한 실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준 기자 adonis@

허영 "美알래스카 年1000달러 배당제, 생활수준 향상 효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본소득 해외사례는…

전(全) 세계 각국에서도 다양한 기본소득 관련 실험이 이어졌다. 다만 현재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월 또는 매년 상당한 금액 이상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허영(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KG타워 내 이데일리 본사에서 진행한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 '포스트코로나 시대와 기본소득' 토론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 사례를 엿볼 수 있다.



권란드, 실직자 2000명에 月72만원 지급
평균고용일 6일 ↑ …"일 안합것" 입증 못해
加온타리오는 효과 적어 1년 만에 중단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알래스카 주정부는 '주민 모두의 것을 주민 모두가 배당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인식으로 영구기금배당제를 실시하고 있다. 1년간 알래스카에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1인당 매년 1000달러 이상(2015년 도기준 1606달러, 약 192만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원은 노스슬로프 유전 채굴권 대여 수입의 25%를 매년 영구기금으로 적립하고, 이 기금을 주식과 채권·부동산 등에 투자한 수익이다. 허 의원은 "주민들의 주인의식 제고와 생활수준 향상"을 시사점으로 꼽았다.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는 매년 1만7000달러(약 1400만원)를 3년 동안 지급하는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했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가 주목적으로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기본소득이 줄어들게 설계한 제도다. 하지만 결국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서 시행 1년 만인 2018년 프로그램을 중단했다.

복지국가로 유명한 스위스 주민들이 기본소득을 거부한 것은 유명한 얼화다. 2013년 기본소득시민운동 단체가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 투표를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2015년 스위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가 모두 반대의견을 공포했다. 실제 2016년 투표에서도 76.9%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핀란드에서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업보조금을 받는 25~58세 개인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기본소득을 실험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월 560유로(약 72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었다. 허 의원은 실험 결과에 대해 "기본소득 대상자 평균 고용일이 6일 증가(78일→84일)했다"며 "기본소득 지급이 노동유인효과를 반감한다는 선입견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태환 기자 pok2022@

2 3차 법무법인 대륙아주·이데일리 라운드테이블 「코로나 시대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일시 및 장소 2020.8.31., 이데일리 본사

참석자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철 고문, 구상모 공정거래부문 대표변호사

(국회)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면), 박수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전문가)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최유경 한국법제연구원 사회적가치법제팀 팀장(서면)

주요내용

이승철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을 보면 지도, 카메라, 시계, 계산기 등 지금은 망한 서비스가 부지기수다. 이 산업을 사수하려고 했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것.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

구상모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변호사



"대형할인점에 대한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빅데이터를 자기 자산으로 생각해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빅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해 지역상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개인정보가 보호되는 선에서 어떤 식으로든 빅데이터를 공유하게 해야 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면)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찾아옴과 동시에,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냉혹한 현실로 내몰려왔다.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 상권은 생활경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박수영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 강화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

"우리나라 유통 산업은 300조 원의 규모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온라인쇼핑이 급속히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대형 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제로섬 관계'로 단순화할 것이 아니라 골목 상권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는 단연코 없다. 경쟁할 건 경쟁하고 상생할 건 상생하게 해야 한다"

"법 개념상 대규모 점포나 중개 점포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모두 소매상이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이제 유통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공동 운명체다. 유통산업은 이제 IT서비스업이다"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 미래사회에서는 비대면 사업만 잘 된다. 여러가지 의미에서 문명사적 전환기로 큰 그림을 봐야한다"

"2020년은 비대면 소비로 가고 있어서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나 경쟁 개념이 바뀌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테크 사회로 진입했다. 빅데이터를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 빅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오히려 협력해야 할 대상.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해야 할 시점"

"대규모 점포 규제 목적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자생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 유통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것"

홍천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시설 위주로 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 사고 있다"

비대면 유통 늘며 오프라인 위기… 마트·동네가게 대립 접고 상생할 때

코로나 시대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유통산업이 격변기를 맞았다. 비대면소비, 일명 '언택트(Untact)' 소비가 확산하면서 온라인 중심의 시장 재편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유통시장의 강자들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공동운명체라며 상생을 강조했다. 다만 해법과 관련해서는 유통대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필요성으로 나뉘었다.

온라인 중심 유통 격변기 한목소리

'온라인 vs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

오프라인 중심 소상공인 이커머스 급성장에 공동 운명체로

오프라인 경쟁력 강화 해법 시각차

"출점제한 등 효과없는 규제 완화"

"규제 풀면 대기업 독과점 부작용"



박수영(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과 이승철(오른쪽 세번째) 대륙아주 고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동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에서 '코로나 시대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홍천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박 의원,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 회장, 홍윤식 건국대 교수, 이 고문,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 구상모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변호사. 노진환 기자

국내 유통업계 코로나로 세 번째 전환점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대학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코로나 시대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라운드테이블(원탁회의)에서 "이제 유통업계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다.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공동 운명체다"라고 현 유통산업을 진단했다.

서 원장은 국내 유통업계가 세 번의 전환점을 거쳤다고 분석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대형마트의 급부상, 2016년 인구구조 감소에 따른 소비패턴 변화,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촉발한 이커머스의 급속성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유통산업은 이제 IT서비스업이다"라고 정의했다.

서 원장은 오프라인 유통시장에서 대기업 대 소상공인의 구도는 끼쳤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커졌다고 했다. 조준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국내 한 신용카드사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합쇼핑몰과 지역 상권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스타필드 하남이 출점한 이후 반경 10km 이내 점포의 매출이 2017년 8.04%, 2018년 7.59% 증가했다.

노화봉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유통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관계라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는 소상공인이 아니고 오히려 협력해야 할 대상"이라며 "소상공인이 디지털 경제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 말했다. 최영홍 한국유통법학회장은 "법 개념상 대규모 점포나 준개점포도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모두 소매상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온라인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두고는 전문가들 간 시각 차가 분명했다. 서 원장과 최 회장, 구상모 대륙아주 공정거래부문 대표 변호사는 유통대기업의 규제를 경감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완화를 주장했다. 서 원장은 "이커머스가 성장하면서 오프라인 유통 시장 전체가 쇠퇴하고 있다"며 규제 확대에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저격한 것이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면세점, 백화점 등도 의무휴업을 도입하자는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했다.

"새로운 탈출구 모색해야" 의견도

최 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많은 나라는 단연코 없다"며 "경쟁없이 건 경쟁하고 상생할 건 상생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변호사는 "대형할인점에 대한 출점제한, 영업시간 제한은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 실장은 "대규모 점포 규제 목적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자생력이 미약한 소상공인에게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의미"라며 맞섰다. 그는 "유통대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올 것"이라며 규제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홍천표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이사는 물가 안정 측면에서 유통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는 "시설 위주로 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 결과 많은 시람들이 비싼 가격에 (상품을)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철 대륙아주 고문은 시대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고문은 "2007년에 나온 아이폰을 보면 지도, 카메라, 시계, 계산기 등 지금은 많한 서비스가 부지기수다. 이 산업을 사수하려고 했으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며 "산업 경쟁력을 논의하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주오 기자 jjuoh@

유통공룡이 독점한 빅데이터… "공유해야" vs "사유재산"

빅데이터가 유통산업 격변기에 핵심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빅데이터로부터 소외돼 왔다. 이런 탓에 유통대기업의 빅데이터 공유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은 "2020년은 비대면 소비로 가고 있어서 아군과 적군의 개념이나 경쟁 개념이 바뀌었다"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돼 비코 사회로 진입했다. 빅데이터를 가진 플랫폼 경쟁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빅데이터는 공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사회에서는 비대면 사업만 잘된다"며 "여러가지 의미에서 분명사적 전환기로 큰 그림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과 공유' 찬반 팽팽

구상모 "소비자 동해 얻은 정보 중기와 공유해 지역상권 살려야"

서용구 "미래 비대면 사업 핵심 플랫폼 경쟁 시대, 공유할 수 없어"



구상모 변호사



서용구 교수

구상모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자기 자산으로 생각해 공유할 수 없다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통대기업들이 플랫폼 사업으로 얻은 빅데이터는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의 자료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품을 거래하는 장을 마련해준 것인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정보를 유통업체의 소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빅데이터를 공유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빅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해 지역상권을 지키는 데 도움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송주오 기자

대기업 확장 막자는 與… 일자리 감소 역효과 난다는 野

유통 대기업의 확장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찬반이 엇갈렸다.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유통 대기업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대기업에 규제를 가했다간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팽팽하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위기가 찾아옴과 동시에,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냉혹한 현실로 내몰려왔다. 국회의 입법적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국민들의 일상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 중심의 골목 상권은 생활경제, 내수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기틀이 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지원해줘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반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강화만으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호라는 취지를 온전히 달성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규제가 오히려 국가 전체적으로 일자리만 줄이는 역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유통 산업은 300조원 규모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유망한 산업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문화와 온라인쇼핑이 급속히 확대하는 등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고 목을 맸다. 권오석 기자 kwo0328@

유통 규제 법안 놓고 이견

권칠승 "골목상권 위기 내몰려 진출 막을 입법적 뒷받침 절실"

박수영 "규제강화로 보호 한계 현실적이고 합리적 정책 필요"



권칠승 의원



박수영 의원

Policy & Business Report



SAMPL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이미지는 국회에서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국회의정관 촬영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회 http://www.assembl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별첨 **국회 일정표**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국회본회의

일자 / 위원회	8월 13일	8월 14일	8월 17일	8월 18일	8월 19일	8월 20일	8월 21일	8월 24일	8월 25일	8월 26일	8월 27일	8월 28일	8월 31일	9월 1일	9월 2일	9월 3일	9월 4일	9월 7일	9월 8일	9월 9일	9월 10일	9월 11일	9월 12일	9월 14일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토	월
국회본회의								● 예산결산					● 예산결산	382회 제0,1차 ● ● 예산결산					382회 제2차 ●	382회 제3차 ●				382회 제4차 ●
국회운영위원회									●	●					●									
법제사법위원회									●					●					●					
정무위원회									●				● ●											
기획재정위원회	●				●	●		●					●	●										
교육위원회									●	●			●											
과학기술정보방송 통신위원회															●						●	●		
국방위원회									●				●	●										
행정안전위원회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 ●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	●				●							●	●		
보건복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						●						● ●					
국토교통위원회									●	●			●								●	●	●	
외교통일위원회									●	●			●									●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 ●					

SAMPLE

용어 해설

제안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회부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상정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제안설명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검토보고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SAMPLE

공청회·청문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SAMPLE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SAMPLE

SAMPLE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7, 8, 10-13, 15, 16층)

www.draju.com